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에 대한 지침

제정 2024. 3. 1.

개정 2024. 8. 23.

개정 2025. 8.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및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와 첨단융합학부 신규채용 인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①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용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1. 채용분야와 연관된 인사위원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첨단융합학부 및 타 학과(부) 채용분야 관련 전임교원으로 하되, 첨단융합학부 외 타 학과(부)의 전임교원이 소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첨단융합학부의 협약에 의한 겸무 교원은 첨단융합학부 교원으로 간주한다.
 3. 채용공고에 협약에 의한 겸무 학과(부)(이하 “협약겸무기관”이라 한다)가 명시된 경우, 협약겸무기관 소속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채용공고에 협약겸무기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용분야와 연관된 타 학과(부)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교원은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원회 구성 이후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 ③ 제2조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소의위원회 회의)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심사(1단계) 및 전공심사(2단계)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내인사 5명 이상, 외부인사 3명 이상을 학부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면접심사)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면접심사(3단계) 평가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5명 이상을 학부장에게 추천한다.

- ② 면접심사 심사위원은 공개발표, 교육 및 연구계획서를 평가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채용분야 공개발표 평가에 대한 의견을 학부 인사위원회에 제시한다.
- ③ 신규임용자의 협약점무기관이 채용공고에 명시된 경우, 첨단융합학부는 협약점무기관으로부터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제8조제1호에 따른 공개발표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제6조(신규임용후보자선정) ① 학부 인사위원회는 단계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및 협약점무기관의 의견, 그리고 임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면접심사(3단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따른 가부 투표를 진행하여 신규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1. 출석위원은 분야별 채용인원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심사대상자 1명당 1표를 행사하되,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출석 인사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심사대상자를 최종 신규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3.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심사대상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한다.
 4. 재투표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심사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일 대상에 대한 추가 재투표 진행 여부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추가 재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 ② 신규임용후보자의 예정 직급은 인사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예정 직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표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안으로 결정한다.

부칙 (2024. 3. 1.)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8.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심사절차 3단계 분리
에 대한 개정지침은 2026. 1. 31.부터 시행한다.